



『뉴시스 뉴스 서비스』 구독 협약서

중구청 - (주)뉴시스 간

뉴스 콘텐츠 구독 협약서

2018년 1월 일

본 뉴스 서비스 약정(이하 “약정”이라고 한다.)는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에 소재한 중구청(이하 “협약기관”이라고 한다.)와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뉴시스(이하 “협약상대자”라고 한다.) 간에 체결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약정은 “협약기관”이 “협약상대자”의 뉴스를 구독하는 데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하고 상호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약정기간)

1. 약정기간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으로 한다.
2.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"협약기관"이나 "협약상대자" 일방이 서면으로 협약해지 또는 협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, 본 협약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된다. 다만, "협약기관"과 "협약상대자"가 특별한 사정으로 다음연도 협약 조건 및 기간 등의 협의과정에서 재협약이 늦어진 경우에는 재협약시까지 전년도 협약에 준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 (서비스)

1. “협약상대자”는 “협약기관”에게 내외신 뉴스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“협약기관”은 뉴스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다.
2. “협약상대자”는 “협약기관”에게 실시간 문자 속보 푸싱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제 4 조 (책임과 제한)

1. “협약상대자”는 “협약기관”에게 프라임뉴스(<http://prime.newsisis.com>)에 접근할 수 있는 ID 1개를 제공한다. “협약기관”은 “협약상대자”로부터 제공된 ID로 프라임뉴스에 접근하여 뉴스를 구독한다.
2. “협약기관”은 “협약상대자”가 부여한 ID를 외부에 유출 또는 판매, 대여할 수 없다.
3. “협약기관”은 “협약기관”의 ID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인지하게 된 즉시 “협약상대자”에게 상황을 알리고 ID 또는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며, ID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제 5 조 (금액)

- 1. “협약기관”은 본 약정기간 동안 매월 뉴스 구독 및 이용에 대한 대가로 월 오십만원(₩ 500,000원 / 면세)을 “협약상대자”에게 지급한다.
- 2. “협약기관”은 “협약상대자”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콘텐츠 공급금액을 현금으로 아래 “협약상대자”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.

- 은행명 : 신한은행
- 계좌번호 : 140-008-979823
- 예 금 주 : (주)뉴시스

제 6 조 (기밀준수)

- 1. “협약기관”과 “협약상대자”는 본 약정내용 및 약정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할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등 일체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2. 제6조 1항의 의무는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다.

제 7 조 (약정해지 및 손해배상)

- 1. “협약기관”과 “협약상대자”는 상호간 권리·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약정의 유지 또는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다.
- 2. “협약기관”과 “협약상대자”는 약정이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8 조 (합의관례 및 소송의 관할)

- 1. 본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“협약기관”과 “협약상대자”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2. 본 약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은 “협약기관”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 9 조 (기타)

“협약기관”과 “협약상대자”는 본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 약정서 2부를 작성,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1월 일

협약기관) 서울특별시 중구청 협약상대자) 주식회사 뉴시스
 중구청장 최 창 식 (인) 대 표 김 형 기 (인)